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화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향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신청, 지원결정, 결과보고(안 제5조~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강화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930-350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

- 팩 스 : 032-930-3509

- 주 소 :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향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7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